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대안

김대희(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그동안 각 정부부처와 민간으로 흩어져 있어져 있던 체육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스포츠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하고, 법정 계획인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와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이관하여 온 것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환경변화와 더불어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과 참여 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은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보장 및 국민누구나 차별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길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동안 부처간의 업무영역 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예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인 영유아-보건복지부, 유청소년-교육부, 성인-문화체육관광부, 노인-보건복지부 등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주부무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에 스포츠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참여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여가생

활을 통한 행복증진 등을 도모하는 등 스포츠의 가치확산을 위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한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기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장관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체육인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기존 정부 중앙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회의급 위원회구성으로 위원회 개최 및 정책결정·의결 등 심도있는 논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특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주요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민관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직접 자문하여 효율적인 체육분야 체육정책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합동위원회 개편되었다. 스포츠는 건강·복지, 과학(기술개발), 산업, 고용, 교육 등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로서 수요자 중심의 민간영역의 정책수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국가정책 시행이 필요한 분야임에 따라 민간합동위원회로 개편이 필요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대부분이 수요자 중심의 민간합동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육관련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부처간의 협의나 범부처적인 체육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전히 국무회의급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있다. 이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출범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과 앞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주요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정책위원회가 개최돼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그 기능과 역할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회부되는 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자문역할만 할 수 있을 뿐 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정이나 스포츠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울러, 미래 스포츠환경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R&D, 스마트헬스케어, 무역·유통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해당 부처 참여 필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제외로 미래 스포츠환경을 고려한 관련 분야 스포츠정책 대응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부처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부재한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건강, 과학, 외교, 교육 등 타 부처와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스포츠복지를 통한 대국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를 통한 대외 위상 강화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대한체육회장·대한장애인체육회장·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의 역할의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대한체육회장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사퇴와 불참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3. 대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차관조정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차관조정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차관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상정될 안전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활발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포츠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협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시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범부처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업이나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대 등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등이 차관조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를 심의·의결하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과연 이를 위한 추진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결국 자문기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그 실효성에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1년에 최소 2번 개최하여 국가의 스포츠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가 50개가 넘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도 50개의 자문위원회 중 하나일 뿐일 것이다.